

2018년 ‘설 명절 청렴주의보’ 발령

<2018. 2. 6. / 감사실>

■ ‘청렴주의보’란?

- 명절, 휴가철, 선거 등 취약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부패·청렴 위해요소를 직원들에게 사전 주의·당부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을 도모

○ 발령내용 :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 선물 등 수수’ 금지

○ 발령기간 : 2018. 2. 7. ~ 2. 28.

○ 관련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임직원행동강령 제26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공직선거법

※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인사규정시행내규)

구분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 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능동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00만원 미만	감봉·정직·강등	정직·강등·해임	정직·강등·해임	강등·해임·파면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파면	파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해임·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500만원 이상	파면					